

## 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수시공시

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122 조(수시공시) 및 신탁약관 제 51 조(수익자에 대한 공고등)에 따라 약관 및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.

1. 투자신탁의 명칭 : 미래든 적립식 주식투자신탁 1호

2. 시행일 : 2007. 10. 15.

### 3. 신탁약관 변경 주요 내용

- ◇ 변경 사유 :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변경하고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하는 클래스(A 클래스) 신설 및 2006년 7월 12일 개정된 표준신탁약관에 맞추어 변경  
(기존 수익자는 C 클래스)

	A 클래스	C 클래스
판매기준	제한 없음	제한 없음
선취판매수수료	납입금액의 1.0%	없음
판매보수	순자산총액의 연 0.80%	순자산총액의 연 1.80%

- ◇ 변경 내용 : 자산운용협회홈페이지 ([www.amak.or.kr](http://www.amak.or.kr)), 본사 홈페이지 ([www.shasset.com](http://www.shasset.com)) 및 판매사 홈페이지 참조